

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안이유

- 잘못된 자구의 수정
- 적용시한의 명시

주요골자

- 제3조중 “과세면제”를 “불균일과세”로 개정
- 제4조중 “면제신청”을 “경감신청”으로 개정
- 적용시한 : 1994년 12월 31일까지

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

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.

(참 조)